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출국정부가 위반사항의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위반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정 요청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3조의2 및 제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검사명령 이행기한)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”은 같은 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.

제44조의2(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)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할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 식품등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1. 제품명
2. 제조국
3. 제조회사

4. 제품사진

5. 원료 또는 성분

6. 그 밖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
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및 국내·외 수집 안전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별표 4 I 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의2. 제3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별표 9 제1호마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호·제3호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3호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 가목의 영업소의 제조·가공시설에 부착·설치되어 사용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

차. 기구 또는 용기·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로 그 자체로는 기구 또는 용기·포장으로서의 형태·기능을 가지지 못한 것(다만, 부분품 등의 조립이나 단순 재단·접착 등 단순 공정만으로 기구 또는 용기·포장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별표 13 I 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의2. 제4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3조의2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4조(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출국정부가 위반사항의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위반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정 요청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②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 제33조의2(검사명령 이행기한)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”은 같은 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.
<u><신설></u>	제44조의2(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)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할

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
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
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
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 또는
성분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
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
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
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
지에 게시해야 한다.

1. 제품명
2. 제조국
3. 제조회사
4. 제품사진
5. 원료 또는 성분
6. 그 밖에 국민 건강에 위해를
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
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이
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
위해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, 국
내·외 수집 안전정보 등을 활
용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수입식품정책과	
연 락 처	043-719-2162